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23. 8. 1.>

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3일

신청인	영업주 성명(변경 전/변경 후)	전화번호
	영업장 상호(변경 전/변경 후)	영업장 소재지
	완비증명서 발급번호	완비증명서 발급일

재발급 신청사유	[ ] 잃어버린 경우 [ ]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[ ] 상호가 바뀐 경우 [ ] 영업주가 바뀐 경우 [ ] 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(사용재료: 설치면적:)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소방본부장 · 소방서장 귀하

첨부서류	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(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없음

유의사항

1. 영업주 또는 상호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.
2.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· 발급일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.
3. 완비증명을 발급받은 후 안전시설등 · 영업장 내부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, 설치(완공)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4. 기존 고시원업 · 산후조리업은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(완공)신고를 하시고,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(이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 신규로 발급 받으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).

처리절차

1.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

신청서	➔	접수 및 확인 (완비증명서 발급대장)	➔	재발급
신청인		처 리 기 관 (소방본부 · 소방서)		처 리 기 관 (소방본부 · 소방서)

2. 상호 또는 영업주가 바뀌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

신청서	➔	접수 및 안전시설등 설치 · 관리 현장확인	➔	재발급
신청인		처 리 기 관 (소방본부 · 소방서)		처 리 기 관 (소방본부 · 소방서)

210㎜×297㎜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 (80g/㎡)]